

## 2026년 창업-BuS 프로그램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투자 재원을 활용하여 2026년 직접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6년 4월 27일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 본 공고는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직접 투자 후보기업 발굴을 위한 모집 공고입니다. 따라서 **최종 선정되더라도 투자 확정 또는 팁스/립스 프로그램 추천이 보장되지 않음**을 사전에 인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모집개요

#### □ 모집개요

- 사업목적: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센터 투자 재원을 활용한 직접투자 및 후속성장 프로그램 추천(팁스 또는 립스)
- 모집기간: 2026. 4. 27.(월) ~ 5. 20.(수) 18:00 까지
- 운영방법: 신청기업 대상 ‘창업-BuS 프로그램’ 활용한 심층 투자검토 및 직접투자 후 후속성장 지원 프로그램(팁스 또는 립스) 추천

#### ①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

| 사업기간  | 투자금액                    | 지원내용   |                            |          |
|-------|-------------------------|--------|----------------------------|----------|
|       |                         | 정부지원   | 연구개발비                      | 창업사업화    |
| 최대 2년 | 2억원 이상<br>(비수도권 1억원 이상) | 최대 8억원 | 최대 1.5억원                   | 최대 1.5억원 |
|       |                         |        | '26년 TIPS 선정기업 '27년부터 신청가능 |          |

#### ② 립스(LIPS: Lifestyle business Incubating Program for Strong Enterprise) 프로그램

| 구분                        | 지원내용   |
|---------------------------|--|
| 민간투자 연계형<br>매칭투자(LIPS 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운영사가 先투자 시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5억원 한도 내 매칭투자(정책자금) 지원</li> <li>• 투자금액 1억원 이상</li> </ul>                            |
| 혁신소상공인투자<br>연계지원(LIPS I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금의 최대 3배까지(최대 2억원, 자부담 30%) 사업화 지원</li> <li>• 시드립스(3천만원 투자 최대 1억원 한도) / 스케일업 립스(5천만원 투자 최대 2억원 한도)</li> </ul> |

## II 신청자격 및 우대조건

### □ 신청자격 \* 세부내용은 팁스, 립스 자격요건 준수

- (공통)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팀) ~ 7년 이내 창업기업( '19. 4. 28. 이후)
  - \* 예비창업자의 경우 투자 시 전북지역 내 본사 설립(법인)예정이며, 최종투자기업 선정 시 창업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없을 시 신청가능
  - \*\* 1차 모집 신청기업의 경우 2차 모집 시 재신청 가능
- 팁스 프로그램 지원자격에 해당되며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가능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아래 필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10년 이내 신청 가능
    -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팁스R&D 일반트랙 필수요건

-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예비)창업기업 (2인 이상 구성 필요)**
  -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신청 가능
  - \*\*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
- ◇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 창업기업 지분 60%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 ◇ **직전 연도(2025년) 매출액 20억원 미만**
  - \* 단,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사업화 성공조건(10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립스 프로그램 지원자격에 해당되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가능기업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 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업력 1년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로부터 접수일 기준
  - \* 단,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자 이전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이전 업력은 최대 20일까지 인정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근거)
- (업종)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 지원 제외대상

- 팁스 R&D, 립스 I, II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재참여 불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기업에서 제외업종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며,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되는 경우
- 다음 기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li><li>2)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수출액이 50만불 이상인 경우</li><li>3) 접수마감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li></ol> |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후속지원 사항

- 팁스 추천 시 전용 보육공간(Start-up Foret, 미래기술혁신센터) 입주지원
- 센터 및 도내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사업화, 투자 및 보증, 글로벌 진출, 보증사업 연계 지원

□ **선정 우대조건** \* 참가신청서 우대조건 란에 체크 및 필요시 해당내용 증빙필요

- 다음 요건 중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후보기업 선정 시 우대
- 팁스 가점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팁스 신청 시 최대 5점 확보 필수

| 분야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                           |
|----------------|--|-------|------------------------------|
| 지역균형<br>(최대5점) | 본사(본점)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약속하는 경우(확약서 제출)<br>*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비수도권 기업이 전체 선정물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2점의 가점 부여 | 최대 3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등 온라인 발급 가능 |
|                | 공장*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약속하는 경우(확약서 제출)<br>*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 2점    |                              |
|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 1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연계 사업 우수 성과    | 프리팁스 성과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 2점    | 창업진흥원                        |
| 사회적 가치         | 기후테크, 소셜벤처 등 ESG 분야 영위 기업<br>* ESG 가점 신청 기업은 전체 선정물량의 10% 달성시까지 가점 부여  | 2점    | 전문/업무 지원기관                   |
| 기타             | 벤처기업 인증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 최대 1점 | 벤처기업협회 / 이노비즈협회              |
|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 1점    | 고용노동부 등                      |

○ **팁스 가점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수혜업체, 강한 소상공인 수혜업체

○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유펀드 투자 주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프로그램(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브랜드 창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우리동네 클라우드펀딩, 민간선투자형 매칭융자(LIPS I),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LIPS II) 등)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실적을 보유한 기업
- 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개인을 대표자로하는 기업
- 다. 「전통시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지역상권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상권 구역 내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
- 라.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제조기반, 서비스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중 법인인 소상공인(협동조합 포함)
- 마. 창업기업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 바. 지방기업(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 사.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받은 스타트업 열풍 지원사업 참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셜벤처 판별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소셜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  |
|--|
| <p>가. (소셜벤처 정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p> <p>*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7</p> <p>나. 소셜벤처 판별 기준은 중기부 고시*에 정하며, 사회성(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등)과 혁신성장성(기술의 혁신성 등) 점수가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판별</p> <p>*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제 2021-48호)</p> <p>** 기술보증기금은 국내 유일의 소셜벤처 판별 기관</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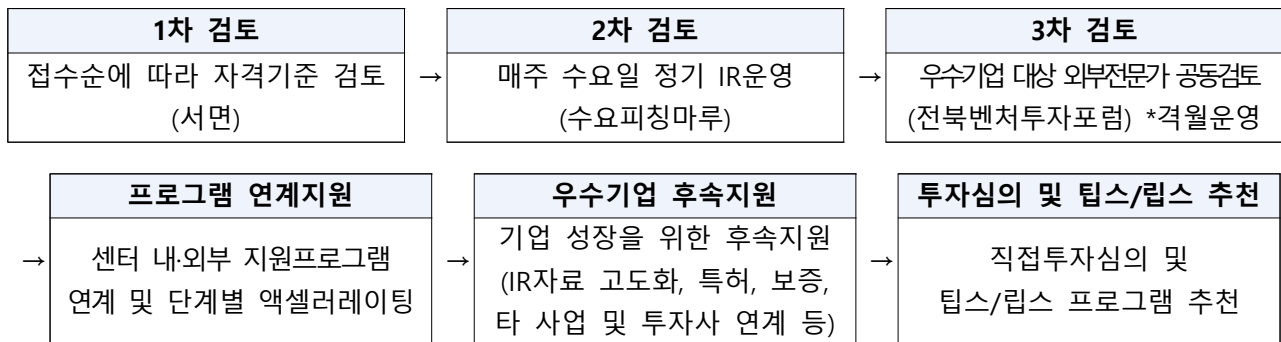
-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         |            |         |         |      |
|---------|------------|---------|---------|------|
| 시스템반도체  | 바이오·헬스     | 미래 모빌리티 | 친환경·에너지 | 로봇   |
| 빅데이터·AI |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우주항공·해양 | 차세대원전   | 양자기술 |

### □ 기업 검토 시 주요 심사항목

| 주요 심사항목         | 내 용                               |
|-----------------|-----------------------------------|
| 주목적 해당여부        | 보유 펀드의 투자 주목적에 해당하는가?             |
| <b>Problem</b>  | 고객의 문제, 수요, 필요성이 명확한가?            |
| <b>Solution</b> | 해결 방안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는가?             |
| <b>Scale-up</b> |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는가? 확장 가능한가? |
| <b>Team</b>     | 창업아이템을 수행하는 최적의 팀 구성이 이뤄지는가?      |

### □ 진행절차 \* 세부내용 변경될 수 있음



### Ⅲ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5. 4. 27.(월) ~ 5. 20.(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플랫폼을 통한 접수(<http://event.jbci.or.kr>)
- 신청방법: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최신 IR자료,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증빙자료(해당 시) 온라인 제출
- 신청 시 참여기업 희망 트랙별 해당서류 필수 제출
  - \* ① 틱스 Track - 창업기업 확인서, ② 립스 Track - 소상공인 확인서
- 세부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 → ② '사업신청' 메뉴 선택 → ③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신청하기 선택 → ④ 기본정보 입력(특수문자 입력 시 제출 불가) → ⑤ 신청서 업로드(용량제한 30MB 유의, 파일형식 PDF) → ⑥ '온라인 접수 제출' → ⑦ '신청·접수확인' 메뉴 선택 → ⑧ 신청정보 (신청사업명, 이름, 휴대전화, 비밀번호) 입력 → ⑨ '접수현황확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검토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 접속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 '온라인 신청 플랫폼' 추가접수 불가함
- 신청기업의 수에 따라 재공고 및 추후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 문 의 처

-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미래전략본부 투자전략팀
- (유선전화) 063-220-8903, 8910

## 참고 1

##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기창업자 해당, 공고일 기준)

### □ 창업의 범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카지노 운영업(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유의사항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 <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방법 및 절차 >

#### ◆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 (신청 방법)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cert.k-startup.go.kr)
  - \* 제출 서류, 발급 처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신청 문의) 1811-3773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콜센터)

#### ◆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절차

서류 준비 및 확인 신청 → 요건 검토 및 신청서 접수 → 창업기업 확인 심사 → 확인서 발급

- 1) 창업기업 확인 신청 후 발급 시까지 최대 10일(규정상 기일)이 소요되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소요되는 준비기간은 규정 기일 10일 내 미포함
- 2) 창업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어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  
중소기업 확인서 미발급 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신청 필요

## □ 창업여부 기준표

| 신청기업구분            | 상세 구분                                   |   | 창업여부   |  |
|-------------------|---|---|--|--|
| 개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 창업 기본요건                                      |  |
|                   |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 창업아님   |  |
|                   |   | 이종  | 창 업  |  |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창업아님 ★<br>*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   |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   | 동종창업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   | 창 업  |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   | 창업아님   |  |
| 성실경영실패자           | 창 업                                     |   |  |  |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                                       | 창 업   |  |  |
| 법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 창업 기본요건                                      |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   |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   | 동종창업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                   |   |   | 성실경영실패자                                      | 창 업  |
|                   | 동종전환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  |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이종창업  | -  | 창 업  |
|                   |   |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 창업아님<br>*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 동종창업              |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창 업  |  |
|                   |   | 자회사 여부  |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 창업아님 ★<br>*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 과점주주 여부           |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 창업아님 ★<br>*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  |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2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성실경영실패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것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http://rechallenge.or.kr)
-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 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1.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 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2****지원제외 대상 업종**

| 구분 | 대상 업종  | 코드번호<br>세세분류 |
|----|--|--------------|
| 1  | 금융 및 보험업   | K64~66       |
| 2  | 부동산업   | L68          |
| 3  | 숙박 및 음식점업<br>(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br>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 6  |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 9124         |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http://kssc.kostat.go.kr)) 참고